

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俞 日 善*

On the Policies to Support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 in U.S.A.

Il-Seon Yoo

〈목 차〉

Abstract	9. 수출지원정책
1. 서 론	10. 종업원지주제도 촉진정책
2. 미국의 중소기업정책기조	11. 불리중소기업시책
3 중소기업지원기구	12. 우수인력확보정책
4.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13.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정책
5. 조세지원정책	14. 미국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특징
6. 정부조달 지원정책	15. 한국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한
7. 경영지도지원정책	정책적 시사점
8. 기술개발지원정책	참고문헌

Abstract

The subsidy policy to support a certain industry gets to be limited by the regulation under WTO regime. So we will have to examine the subsidy policies done so far and let them fit the regulation. In order to improve this job, I think it important to investigate other country's case and learn how to respond to this same circumstances.

In this context, the support policies for small business company in America will be focused on in this article, since America has powerful effect on forming the regulation of WTO. In America the basic principle in allocating all kinds of resources is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market competition, which is based upon the equality in starting line. In case of small business, the initial condition is more disadvantageous to small business firms than large companies. In the light of recovering the equal

*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과 경제학박사

initial condition for the fair competition, the policies to support small business is justified in America, to the extent that the policy doesn't do the normal operation of market harm.

As for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supporting policies, first of all, the organization which is called SBA(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independently in order to take care of all small business firms. Second, the loan is made by the commercial banks with market interest, not below it, by the credit of SBA. It helps to reduce the market distortion far less. Third, the subsidy policies focus on improving the technology for small business firm. Fourth, the policies for the minority-woman, indian, the handicapped, is set up. Fifth, the federal government cooperate with local one systematically.

The Conclusion is that small business firms in America are protected and subsidized, to the extent that market is not distorted. This belief in the principle of market leads SBA to invent market oriented subsidy policies.

1. 서론

1995년 초에 발효된 WTO협정에는 예전의 규정과 비교해볼 때 전반적으로 보조금에 대한 규율을 크게 강화하고 지금까지 규정의 불명확화와 명료성의 미비로 국가간의 분쟁이 되어 왔던 점을 중시하여 명료성이 상당히 중대시되었다. 즉 보조금의 종류를 성격과 피해의 구제방법에 따라 명확히 구분하고 금지보조금(prohibited subsidies), 조치가능보조금(actionable subsidies), 그리고 허용보조금(non-actionable subsidies)으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분류기준과 의무위반시의 구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¹⁾

어느 국가든 보조금정책은 중소기업지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보조금지원에서 특정성(specificity)여부, 정부의 개입여부가 규정위반의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되고 이에 따라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과 정책금융 등 무역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보조금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직접보조금의 형태를 띠면서 특정기업이나 분야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형식이였다. 그러나 앞서 지적하듯이 WTO체제는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나 지원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특히 WTO협정은 그 동안 애매모호했고 투명성이 떨어져 그만큼 분쟁의 여지도 많았던 보조금에 대해 그 개념과 분쟁해결절차 등을 명료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와 정부의 정책도 WTO관련협정규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취지하에서 WTO 형성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경제적 함의를 얻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법무부(1994),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제11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참조

2. 미국의 중소기업정책기조

2.1 중소기업정책의 이념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의 이념은 미국경제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형성되었다. 건국초 자유와 평등의 가치실현의 이념은 경제적으로 민간부문의 경제활동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시장경쟁체제로 나타났다. 즉 모든 경제주체가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하고 경쟁함으로써 기회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자원의 최적배분에 따라 경제적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러나 산업화가 꾸준히 지속되면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규모면에서 기업의 대기업화, 시장구조면에서 독점시장화가 진행되는 이른바 경제력 집중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소규모 기업들의 사업축소, 전업, 폐업, 도산 등 이른바 '경영의 궁핍화'를 가져왔고, 시장경쟁체제의 위협과 경제 각 계층간의 대립을 격화시켜 궁극적으로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게 되었다.

이런 사회적 인식에서 의회는 반독점정책을 위해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Sherman법(1890) 과 이것을 보완한 Clayton법(1914)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독점금지법들에는 당시 유력한 독점수단인 기업합병형태의 불공정한 경쟁행위만 금지하면 시장경쟁력을 회복될 것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을 뿐 중소기업 및 소수 불리기업의 적극적인 보호 및 육성이 시장경쟁체제 유지에 긴요하다는 사실을 인식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법적 규제는 유력한 독점수단인 기업합병은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으나 기업들은 이 법을 회피하면서 지주회사형태로 독점시장구조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시장경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다.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을 겪으면서 수많은 중소기업의 도산으로 실업문제가 심각하자 고용문제 해결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인식되었고,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는 데 소수의 대기업으로는 전쟁물자조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시적인 중소기업수공업공사(Smaller War Plants Company : SWPC)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미국 경제의 뿌리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의회나 행정부 내에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중요성은 1953년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제정과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신설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법에서는 중소기업이 자유경제체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강조되어 있고, 경제의 집중화에 수반되는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연방정부가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독점적 폐해를 막는, 반독점의 상징으로서의 중소기업에 대한 개념설정은 이후 연방정부의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2 중소기업의 정의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의 이념하에서 중소기업법에서는, 첫째 소유와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

어지고, 둘째 그 산업분야에 있어서 지배적이지 못한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정의가 실무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정의를 할 권한은 중소기업청장이 가지며 정의를 할 때 기준으로 종업원수 및 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정의에 있어서 종업원수를 그 기준의 하나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수는 각종 산업의 특징을 반영하고 그 관련요인을 충분히 참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각 산업별로 다르게 정해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지금까지 경제환경변화 등 시대적 요청에 의해서 중소기업의 정의는 수시로 변해왔다.²⁾

〈표 2-1〉는 특히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규모기준이다. 이표에 의하면 제조업과 도매업의 경우는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각각 500인과 100인 미만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규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소매업과 서비스업은 대체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350만 달러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미국의 중소기업 정의

제 조 업	도 매 업	소 매 업	서 비 스 업
총 461업종 500인미만(345) 750인미만(55) 1,000인미만(58) 1,500인미만(3)	총 69업종 일률100인미만	총 66업종 350만달러(49), 450만달러(8), 550만달러(1), 600만달러(1), 650만달러(1), 1,000만달러(1), 1,150만달러(2), 1,250만달러(1), 1,350만달러(2)	총 161업종 250만달러(5), 350만달러(90), 400만달러(29), 600만달러(2), 700만달러미만(10), 900만달러(10), 1,250만달러(7), 1,350만달러(2), 1,450만달러(3), 1,000인미만(2), 1,500인미만(1)

자료: Small Business Size Standards, Fed. Reg. 54,244(1989)

주: 1) ()는 해당업종수

- 2) 종업원기준은 ① SBA지원 신청전 1년이상 상시근로자, 파트타임, 계절적 근로자의 평균월간 평균 고용수 ② 사업경력 1년내 기업은 평균월간 고용자 수 ③ 국내외 관련 자회사 포함
- 3) 매출액 기준은 ① 과거결산 3년간의 평균매출액 ② 사업경력 3년내 기업은 사업기간 1주당 평균매출액에 52를 곱한 금액. 매출액의 정의는 재화 서비스판매액, 이자, 임대료, 수수료에서 반품액, 고정자산 매각액, 본지점(해외자회사포함)감정액, 세금을 공제한 것임

그러나 SBA의 특정제도와 특별행정목적에 의해 이러한 기준이 모든 곳에 적용되지 않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첫째,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개발공사(Development Companies) 등과 관련한 기업(관련자회사 포함)중 순자산액 600만 달러 미만, 과거 2년의 결산에 있어서 연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연평균소득이 200만 달러 미만인 기업, 둘째, 정부조달대상 중소기업(관련 자회사 포함)은 하청발주계약액이 1만달러 미만인 경우 고용자수 500인 미만으로 한다. 셋째, 원목을 제외한 정부보유자산 처분제도 대상인 중소기업인 경우 제조업에서 종업원수

2) 寺岡 寬(1990) 《アメリカの中小企業政策》, 信山社 p. 40-46 미국 중소기업정의 변천에 대해 참고

500인 미만, 비제조업에서는 과거 3년간의 결산에서 연평균 매출액이 200만달러 미만의 기업으로 한다. 단 정제업은 종업원수를 1,500인 미만으로 하고 일평균 정제량이 45,000배럴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 넷째, 지역재개발법(1961)에 의해 고실업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일반 중소기업기준의 25%를 인상한다.

3. 중소기업지원기구

3.1 의회의 중소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정책관련 위원회는 양원 중소기업위원회를 주축으로 상원위원회(30) 중 18개위원회, 하원위원회(35) 중 15개 위원회, 양원합동위원회(4) 중 경제 및 세제 등 양위원회가 있다.

상원 중소기업 특별위원회는 1940년에 미국 중소기업문제 조사연구특별위원회로 설치되고, 1938년에 개최되었던 중소기업전국대회의 결의와 제2차대전을 계기로 한 중소기업의 물자확보를 그 직접적인 과제로 하였다. 그 초당적인 중소기업지원활동은 결과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BCC), 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단체 등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게 되어 1947년에는 BCC에 흡수되고 1949년에 폐지되었다가 1950년에 상설특별위원회로 되면서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다. 하원 중소기업 상임위원회는 1941년에 미합중국의 중소기업과 국방계획의 관계조사연구특별위원회로서 발족된 후 1973년에 이르러 상임위원회로 되면서 입법권을 가지게 되었다. 양 위원회의 업무는 중소기업청의 고유업무와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연구, 정부중소기업정책에 관한 단독심의, 타위원회와의 합동심의, 공청회, 중소기업정책법안의 입법 및 심의 등이다.

그 결과로서는 1942년 중소기업동원법에 의한 중소군수공장공사의 설립, 1950년의 국방생산법에 의한 중소군수공장청의 설립, 1953년의 중소기업법의 제정, 1947년 군수조달법 이후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조달의 공평한 배분 확보 활동으로부터 1956년 중소기업 내각위원회의 설치, 1980년 백악관 주최 중소기업전국대회의 개최, 1982년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을 들 수 있다.

양원 중소기업위원회에 의한 중소기업관계법의 제정 및 개정횟수는 1953년 중소기업법 이래 1982년까지 191회에 달하였다. 그 심의록을 포함한 보고서는 상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과 전쟁계획을 비롯하여 522건, 하원 중소기업위원회에서는 국방계획과 중소기업과의 연구 조사를 비롯하여 477건이었다.

양원 중소기업위원회는 그 소관 권한이 매우 넓으며 1980년 이후 중소기업정책이 국가정책의 중심이 됨에 따라 의회에서의 지위도 매우 높아졌다. 중소기업위원회를 경유하거나 이와 협의하지 아니하고 입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되었다. 중소기업위원회의 특징은 중소기업법에 관한 한 초당적 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며 그 입법에 관한 의회활동은 주목할만 하다.

3.2 대통령 자문위원회

대통령은 건국이래 지켜온 전통적인 독립, 자유평등, 지방분권과 같은 미국생활양식을 유지

하고, 자신의 기본정책이념과 그 체계화를 담당하고, 경제전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듣기 위해 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및 소수민족기업자문위원회(AC/SMBO)를 두어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등 불리기업의 종합시책을 심의한다. 정부대표 5인, 일반기업가 5인, 소수민족기업가 5인 등 15인으로 구성한다.

기타 중소기업관련 자문위원회는 수출진흥정책에 관한 관계부처위원회로서 중소기업수출진흥법에 근거한 시책을 심의하는 수출진흥관계부처위원회(ICEE), 여성의 취업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고 30인으로 구성하며 여성의 기업설립촉진, 여성중소기업의 육성, 지원 장려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문제자문위원회(ACW), 신체장애자의 취업촉진을 목적으로 1968년 직업갱생법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신체장애자중소기업의 육성을 심의하는 신체장애자고용위원회(CEH) 등이 있다.

3.3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1953년 설립된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다른 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청장은 각료와 마찬가지로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용되고 오직 의회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조직으로는 청장, 차장, 3차관보, 11개위원회, 27개국, 10개지방청 98개 지방사무소를 가지고 있다.

〈표 3-1〉에서 보듯이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정의, 종합정책의 입안, 감사 및 시장 등 중소기업 전반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중소기업지원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이와같은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중소기업자문위원회, 중소기업투자회사자문위원회, 전국 중소기업진흥센터 자문위원회, 소비자문제자문위원회(CCA), 중소기업자격심사위원회(SAB) 등이 그것이다.

3.4 중소기업지원센터(SBDC : Small Business Development Center)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도자문, 인력훈련, 기술지원 등 경영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 예산의 50%정도(연간 750만불)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단체, 상공회의소, 지역금융기관, 대학 등으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하는 반관반민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미국내 57개의 주센터와 700여개의 보조센터가 있으며 각 주센터를 중심으로 보조센터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SBDC는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과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SBDC의 자금조달 및 운영에 지역경제단체 및 대학들이 참여하고 있고 지역실정을 반영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표 3-1〉 중소기업청의 권한

종합정책의 입안, 조정, 감사 및 시정권	규제완화와 법정변호권	공문서작성 간소권	정보수집권
1. 대통령고문과 협의하여 중소기업종합시책을 입안 2. 각 부처의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청의 조정, 감사 및 시정을 받아야 함	1. 대통령의 部令 개선명령 및 법령규제완화법에 근거하여 각 부처는 현행부령의 적용완화계획을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신규省令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의 동의를 구함 2. 각 부처의 令 적용완화 또는 제외규정, 계획등의 이행상황을 감사하고 시정을 구하며 대통령 양원 법사위위원회, 양원 중소기업위원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 3. 중소기업의 행정법 위반사건에 관하여 법정에서 변호권을 행사	문서업무간소법 및 대통령의 문서작성축소명령에 근거하여 각 부처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되는 통계, 인허가신청, 신고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의 동의를 구한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관하여 검토하고 그 시정을 요구	각 부처는 중소기업청이 구하는 정보에 관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공
조달권 및 관여검사권	지원기업에 대한 관여조사권	중소기업의 정의 및 자격증명권	대통령 의회 보고의무
각 부처의 중소기업 조달정책의 공동입안 실시, 중소기업청이 청구하는 중소기업별도 예산, 개별계약의 선별, 계약조건의 시정권한 대통령 및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짐	중소기업청지원기업, 협조기관, 중소기업투자회사, 대학부설중소기업진흥센터(SBDC), 중소기업지도소(SBI), 조건부 지주회사(QET), 중소기업도급발주의무를 지고 있는 고액계약자, 동 고액도급계약자의 관여검사, 지정, 계속지원조치의 정지 등의 권한	중소기업의 정의, 자격규준, 계약이행 능력증명, 자격재심사 등의 권한	권한을 행사하고 소관사항에 관하여 독자적 의견을 붙여서 직접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할 의무

자료 : 중소기업청(1996).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에서 수정보완.

4. 중소기업 금융지원정책

4.1 개별금융지원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미국기업들은 주로 일반은행으로부터 대출은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융자보증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은 대부분은 지급보증을 통한 자금의 가용성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자율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개별금융지원은 일반적으로 보증을 서주는 것인데 지원자격요건 및 융자조건에 엄격하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자격요건으로는 公序良俗에 위반되지 않을 것³⁾, 중소기업청 이외에서는 타당한 조건으로 필요자산을 입수할 수 없을 것⁴⁾, 사업수입으로부터 차입금을 변제할 수 있고, 담보력을 가지고

있을 것⁵⁾, 소정의 절차서류⁶⁾를 완비할 것 등이다.

대출금리는 기업의 신용도, 대출취급코스 및 대출기간 등에 따라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며 중소기업에 대한 저금리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일반은행의 기업대출은 연평균금리 7.28%인데 비해 1년이상 장기금리는 8.34%로 대출기간이 장기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소기업청 보증부 대출의 경우 대부분 프라임레이트에 2.75-4.75%내로 부가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6년 현재 프라임레이트는 8.25%수준이다. 이처럼 보증부대출금리가 일반 금융기관의 이자율수준보다 높기 때문에 신용이 있는 중소기업은 일반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고 있다. 그러나 SBA의 보증부 대출은 일반대출에 비해 장기로 용자되기 때문에 자금사정이 좋지 않는 중소기업에게 선호되는데 운전자금은 5-10년, 시설자금은 25년까지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용자는 <표 4-1>과 같다.

<표4-1> 중소기업청이 제공하는 용자의 종류

일반사업자금	통상의 운전 설비자금을 말한다. 직접, 즉시협조, 중소기업청분담분은 35만불, 보증용자는 50만불로 한다. 건축 및 장비설치는 25년, 설비자금 10년, 운전자금 6~7년으로 이자는 직접, 즉시협조, 중소기업청의 분담금은 14~15%(82년), 보증용자는 금융기관의 통상이자율 기준으로 하되 기준이율의 2.75%범위내에서 결정한다.
계절용자	상거래의 계절적 변동에 따른 재고용자로서 재고품, 선하증권, 어음등을 담보로 한다.
계약용자	정부계약의 이행에 따르는 용자로서 계약대금 대리수령권을 담보로 한다.
주택건설용자	판매용의 주택, 상업시설 건축판매업자에 대한 용자로서, 지역개발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신체장애자용자	신체장애자가 경영하는 중소기업, 신체장애자를 고용하는 영리 또는 비영리 기업에 대한 용자로서 1972년부터 실시하였다.
경제기획용자	실업자와 저소득자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수민족기업, 여성기업 등에 대한 용자이다.
에너지절약용자	에너지부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석연료절약기기, 대체에너지 사용기기제조업자에 대한 용자이다.

- 3) 선량한 성격(good character)의 기업체 즉 公序良俗에 위배되지 않는 유무의 판단은 신청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주요주주(10% 이상) 등을 대상으로 범죄력, 갱생력, 사업경력, 학력, 금융기관의 신용도, 상거래신용도, 노사관계, 개인적 습관, 가족에 대한 책임, 성실성, 지역사회에서의 신망도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 4) 중소기업청 이외의 정부 및 卹지방기관, 당해기업의 소유자, 경영자, 임원, 이사, 공동경영자, 주요주주 등의 개인적 자금 및 자산의 활용, 내부유보금, 유희자산의 처분, 민간은행, 주식, 사채 등의 발행, 자금운용, 계약 등에 의하여 조달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타당한 조건이란 당해기업 및 관계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서, 신청기업 소재지의 정규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부조건을 말한다. 신청인은 타당한 조건으로서는 필요자금을 입수할 수 없다는 증명으로서 거래은행, 정규금융기관의 용자거절 증명(인구 20만 이상에서는 2개은행 이상)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절증명은 당해 금융기관이 소액용자 등의 이유로 인하여 채산이 맞지 아니하며, 豫貸率이나 용자제한 등에 관한 법규에 의하여 용자실행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청의 보증 및 협조가 있어야 용자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행한다.
- 5)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당해 기업의 이익원천으로부터 충분히 상환할 수 있거나 객관적 조건이 변동되더라도 담보물건의 처분, 보증인의 대위변제 등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6) 고용기회의 균등, 차별금지, 퇴직정부직원의 일정기간 고용금지 등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 허위신청, 법령위반에 따른 형사 및 민사상의 처벌 동의서 등을 말한다.

개발회사용자	중소기업투자법이 정하는 주 및 지방개발회사를 경유하여 실시하는 용자이다.
수출진흥용자	수출에 필요한 인건비, 원재료비, 재고, 시장조사비, 시설의 건설 및 취득에 관한 용자이다.
지주트러스트용자	중소기업의 도산이나 폐쇄를 방지하기 위하여 51% 이상의 중업원이 트러스트를 결성하고, 51% 이상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중업원지주회사용자이다. 담보는 당해 기업의 자산 및 주식으로 한다.
물적재해용자	대통령, 농무장관, 중소기업청장의 천재선언, 주지사 증명의 천재, 시민폭동 등에 의한 물적피해에 대한 용자로서, 그 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용자한도는 50만달러(개인자산 10.5만달러)로 한다.
물적재해에 따른 경제피해용자	위에서 말한 천재 등으로 인한 재고품의 유실, 거래불능, 자금회수의 연기 또는 불능 등의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용자이다.
법령피해용자	연방, 주, 지방 등의 공해방지, 노동안전, 위생 등에 관한 법령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역개발, 고속도로의 건설 등 공공사업에 수반되는 이전 등에 필요한 자금 등의 용자이다.
공해방지용자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주, 지방 등의 산업체에 대한 보증용자이다. 중소기업청이 보증한 주 및 지방의 산업체를 연방융자은행에 매각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공해방지기기를 매입하고 이를 필요한 중소기업에 임대한다. 중소기업청의 보증료는 연부상환액의 3~5%로 한다.
재향군인용자	상이군인, 월남전복무군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재향군인청의 용자로서 중소기업청의 용자를 받을 수 없는 자에 한한다.
보증회사보증	정부계약, 공해방지사설도입 등에 있어서 필요한 계약이행, 대외지불, 입찰 등에 관한 차입보증에 대하여 보증회사의 보증을 중소기업청이 보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의 보증료는 보증회사 보증료의 20%로 한다.

자료: 국회사무처(1993) 주요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은행과 협조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도 활용하고 있다. ① 공증금융기관제도(certified leaders program) :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과의 포괄보증계약에 의하여 보증용자신청 후 3일 이내에 처리하는 제도로서 500개의 용자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② 우량금융기관제도(preferred leader program) : 우량 금융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권한에 속하는 차용자의 자격인정, 신용력, 대부금의 관리, 회수, 청산 등 일체의 사무를 위임하는 제도로서 75개 금융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③ 협조은행수증가 : 연방법 및 주법 이외에 지방은행의 중소기업청 협조용자를 촉진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의 입회검사를 동의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235개 지방은행이 참가하고 있다. ④ 유통시장의 촉진 : 중소기업청보증용자채권을 유가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이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이 보증한 채권(70~90%)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각하여 신규대부자원을 입수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득을 높일 수 있다.

4.2 신용보증제도

미국은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독립적인 기구는 없고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해 일정비율을 보증지원하는 제도로 정착되어 있

다. 이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증대상은 제조업(500인 이하), 도매업(100인 이하), 소매업(연매출액 500만불 이하), 건설업(연수주액이 700만불이하)이며, 도박업, 금융업, 비영리법인, 독점기업, 피라미드 형태의 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둘째, 부분보증제도로써 보증금액은 15만불에서 75만불까지이며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70~90%를 보증하고 있다. 셋째, 보증기간은 자금의 용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부동산구입자금은 최장 25년, 설비자금은 최장 10년, 운전자금은 최장 7년이다.

보증이 있는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7년미만인 경우 프라임레이트에 2.25%를 더한 수준, 7년 이상인 경우 프라임레이트에 2.75%를 더한 수준으로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이 보증액의 2~2.5%를 은행에게 보증료로 징수하고 은행은 보증기업에게 이것을 전가한다. 은행은 중소기업청이 보증한 대출액을 은행, 연금기금, 보험회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제2금융시장에 판매하여 대출액의 조기현금화 및 수익획득이 가능하다.

4.3 모험자본 조달시책

1958년 미연방준비위원회는 중소기업의 금융이용행태를 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중소기업이 이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장기융자와 지분참여자금공급이라는 다른 새로운 자금조달 방법이 밝혀졌다. 이러한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은 주로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전통적인 중소기업과는 달리 첨단산업에서 더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장기융자와 지분참여자금공급에 대한 자금수요의 연구를 통해 연방정부는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러한 모험자본이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고 건전하게 발전하게 된 여러가지 사회적 환경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에 대한 가치관과 높은 사회적 평가, 둘째, 유망한 개발 상품에 대한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 셋째, 창업초기부터 벤처사업에 투자한 모험자본이 성공한 경우 수익률이 대단히 높고 주식의 장외시장(NASDAQ)의 발달로 성공보수에 대한 투자회수여건이 유리하다. 네째, 기술개발을 위한 대학과 정부연구기관,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자금지원 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발전은 벤처기업의 확대 및 모험자본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연구개발자금, 장기설비자금 등의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을 주식, 사채 등의 공모 또는 민간모험자본회사 등으로부터 타당한 조건으로 입수할 수 없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이 공인한 중소기업투자회사(SBIC), 소수민족중소기업투자회사(MESBIC), 주개발회사, 지방개발회사, 조건부주지방개발회사 등을 경유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모험자본 중심의 지원은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으며 지금은 가장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금융조달원의 하나가 되었다. 이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중소기업투자회사 (SBIC : Small Business Investment Company)

중소기업투자회사는 1958년 중소기업투자법에 근거하여 설립되었다. 중소기업투자회사는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기는 하지만 민간기업으로서 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

한 투자 및 장기융자자금의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중소기업청이 요구한 최소요구자본금과 관리자에 의한 운영을 통해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최소요구자본금은 SBIC는 250만달러, 특별중소기업투자회사 SSBIC⁷⁾는 150달러이나 실제로는 최소 500만달러 정도되어야 중소기업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 자금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SBIC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중소기업청은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이때 중소기업청은 SBIC가 투자결정에 대한 감독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과 각 중소기업투자회사 관리자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에 대한 여러가지 요건을 감독한다.

정부보증의 경우 SBIC는 자기자본의 300%까지, SSBIC는 400%까지 보증을 얻을 수 있는데 보증정도는 요구되는 보증의 유형, SBIC내의 자본규모, SBIC나 SSBIC내의 인가취득 여부, SBIC나 SSBIC의 투자유형, 그리고 잔존보증지원 여유 등의 요인에 의해서 결정된다.

<표 4-2> SBIC와 SSBIC의 중소기업지원현황

(단위:백만달러)

연도	SBIC		SSBIC		합계	
	건수	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1971	2,536	156.0	157	1.9	2,693	157.9
1975	1,516	125.4	306	10.9	1,822	136.3
1980	2,182	286.2	470	37.9	2,652	324.1
1985	2,708	401.8	1,318	94.1	4,026	495.9
1986	2,934	474.0	1,585	121.4	4,519	595.4
1987	2,483	477.2	1,598	147.3	4,081	624.5
1988	2,472	547.0	1,583	141.5	4,055	688.5
1989	2,295	638.4	1,482	139.8	3,777	778.2
1990	1,674	516.3	1,320	132.5	2,994	648.8
1991	1,206	500.3	1,088	104.1	2,294	604.4
1992	1,006	360.4	936	88.7	1,942	449.1
1993	694	450.7	890	90.3	1,584	541.0
1994	1,063	791.4	1,424	156.4	2,487	947.8
누적	84,526	10,060.9	19,620	1,581.0	104,146	11,641.9

자료: 이덕훈 외(1995),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SBIC는 민간자금과 중소기업청에서 보증된 장기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지분참여, 장기융자 그리고 이 두가지 방법의 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공급된다. 중소기업청의 융자기준 및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자본금(자기자본금+중소기업청 적립금)의 20% 이내,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조건으로 투자(보통주, 전환사채) 또는 융자한다. 이자는 중소기업청의 공시이자(국채이자+7%), 주법이 정하는 이자, 당해 중소기업투자회사소재지의 연방준비은행(FRB)의 90일 어음할인료(기존이율+3%)로 한다. 투융자는 단독, 협조 및 보증의 방법에 의한다.

SBIC는 일정기간 투융자대상 및 기업의 경영관리 및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은 특별

7) 1971년 이후 중소기업청은 특별 중소기업투자회사(SSBIC)의 설립을 인가하여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불리한 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을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한 사유가 없는 한 30년간 폐업할 수 없다.

SBIC 지원체제가 만들어진 후 1994년까지 SBIC는 대략 84,000건에 100억달러 정도의 자금을 지원하였고 SSBIC는 1994년까지 19,000여건에 16억달러 정도를 투자하였다. 이러한 투자 추이는 1984-198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으나 1994년에는 대규모 자금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투자는 100만명 이상의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4-2>는 SBIC와 SSBIC의 중소기업지원현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보면 1980년 이후 지원규모가 상승하다가 1990년 이후 하락하고 있고 최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SBIC와 SSBIC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1976년부터 198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85년의 경우 총 225건에 3억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1986년 이후 이러한 자금지원은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94년의 경우 총 37건에 1억5,000만 달러의 자금지원만이 있었다. <표 4-3참조>

<표 4-3> 중소기업청의 SBIC와 SSBIC에 대한 자금지원현황 (단위:백만달러)

연도	SBIC		SSBIC		합계	
	건수	용자액	건수	용자액	건수	용자액
1976	51	36.3	20	9.3	71	45.6
1980	140	148.8	58	32.5	198	181.3
1986	160	264.9	65	44.1	225	309.0
1990	27	51.3	20	24.1	47	75.4
1994	20	95.0	17	20.0	37	115.0

자료: 이덕훈 외(1995),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2) 소수민족 중소기업투자회사

중소기업법(제301조 제4항)에 규정된 투자회사로서 소수민족중소기업에 대한 투용자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수민족 중소기업투자회사의 우선주(비의결권주)를 3%의 배당조건으로 그 자기자본금의 2배를 한도로 인수한다. 기타의 조건은 중소기업투자회사(SBIC)에 준한다.

(3) 州 개발회사

중소기업투자법(제501조) 규정에 의한 특수영리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州內의 지역개발에 관하여 경제개발청, 주택도시개발청 등의 투용자자금수령회사이다.

출자는 주 및 지방관청, 은행 등 금융기관, 비영리기관, 투용자대상중소기업 등이 한다. 일반 사업자금의 용자로서 용자한도는 년수에 50만달러를 곱한 금액, 보증용자를 원칙으로 하고, 기간은 25년(적용기준은 20년) 주식이나 사채의 인수에 의하여 5년 이상 장기용자를 실시하며, 투용자조건은 중소기업청 차입금반환원이자에 소요경비를 가산한 것으로 하고, 투용자잔고는 언제나 자기 자금 57.1%, 중소기업청 자금 42.9%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4) 지방개발회사

중소기업투자법(제502조) 규정에 의한 영리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주내특정지역의 개발에 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출자자는 주내 거주자(주, 지방관청, 기업, 은행, 주민) 25인 이상으로 하고, 출자금 또는 출자자의 75% 이상을 특정지역의 거주자로 한다. 출자금 중 중소기업(4개사 이상)에 한하여 25% 이상을 인수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투융자액은 당해 기업의 소요자금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 투융자액의 50% 이상은 출자금을 가지고 충당한다. 투융자이자 중 중소기업청 차입금 변제이자에 소요경비를 가산한 것으로 한다. 중소기업청의 지원조건 등 기타의 조건은 주개발회사에 준한다.

(5) 조건부 주지방개발회사

중소기업투자법 제5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경영지도를 주된 업무로 한다. 출자자는 특정지역거주자(지방관청, 민간금융기관, 지방단체, 동업단체, 중소기업, 일반시민) 25인 이상으로 하며 이사회는 지방관청, 금융기관, 지역동업단체 등의 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일반사업자금 용자에 있어서, 중소기업청은 조건부 주지방개발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인수 및 보증하고 이러한 보증사채는 연방융자은행이 소정의 조건으로 인수한다. 다만, 동회사의 임원과 이사가 "선량한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할 것 등을 조건으로 한다.

사업지역은 州內 特定地域 및 州間 特定地域으로 하며 중소기업의 지도, 장기자금의 대부(조건은 앞에서 말한 지방개발회사에 준한다) 등을 실시한다. 이러한 개발회사는 용자대상중소기업의 주식, 사채를 인수하지 못하며, 동회사의 이사 및 임원도 용자대상중소기업의 주식 및 사채를 10%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

4.4 장외거래시장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확대시키기 위해 1939년 미증권업협회가 주식의 장외시장인 NASDAQ (National Association of Securities Dealers Automates Quotation)을 제도화하였다. 1971년 전국규모의 전산망을 구축하여 미국전역의 장외거래딜러의 호가를 실체가격으로 공시하고 달러의 호가가 일치하는 경우 자동체결됨으로써 뉴욕증권거래소와 견줄만한 큰 시장으로 발전하였다. NASDAQ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중소기업, 모험기업 등 비상장주식중 미국증권협회에 소속된 기업의 주식이다. 그 규모는 94년 말 현재 등록기업수가 4,902로서 뉴욕증권거래 상장기업 2,570사의 2배수준이며 연간거래량은 744억주로 뉴욕증권거래소의 734억주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장외거래시장은 장외거래시장을 상장하기 위한 전 단계로 인식하는 한국, 일본과는 달리 증권거래소와 경쟁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거래할 수 있는 기업은 증권거래소에서의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공개법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장성이 있는 중소기업은 이 시장을 통해 손쉽게 자금조달을 하고 창업자 및 모험자본의 자금회수가 용이하다.

4.5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형태

지금까지 언급된 금융지원정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형태를 기업성장단계별로 보면 미국기업은 자기자본, 모험자본, SBA창업지원금(신용보증포함), 비공식투자자(informal investor)를 바탕으로 창업을 한다. 창업후 어느정도 안정되면 일반은행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은행은 2년미만의 기업의 경우 파산위험을 50%정도로 보고 있어 이런 기업은 2년이 넘어야 비로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반은행의 대출이 용이하지 않을 때는 SBA를 통해서 SBIC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성장단계에 접어들면 금융의 기회는 크게 확대된다. 일반은행, 모험자본, 장외시장을 통한 직접금융 등을 통해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

창업시	초창기	초기성장단계	성숙단계
	←-----	----- 은행대출 -----	-----→
←-----	----- 자기	자금 -----	-----→
비공식 투자자--	-----→		
←-----	----- 모험	자본-----	-----→
←-----SBA-----	←----- SBIC-----	←----- 장외시장	-----→

(그림 1) 기업성장단계별 자금조달형태

5. 조세지원정책

연방정부는 모험자본에 대한 지원, 기업자유지역지원, 중소기업지원, 첨단기술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지방정부를 통해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조세지원은 해당기업의 법인소득세, 판매 및 사용세 그리고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연방정부가 공제하거나 대부분의 酒稅 및 지방세를 면제하는 형태이다.

기계와 장비의 판매 혹은 사용에 대한 조세의 면제가 41개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산업연료 및 원료에 대한 판매 및 사용세가 40개주에서 면제되고 있다. 기업제고에 대한 재산세 경감 34개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26개주, 직업창출을 위한 세액공제 25개주, R & D에 대한 소득세 경감이 20개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조세지원을 통한 연방정부의 주에 대한 지원액은 1994년 현재 645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6. 정부조달 지원정책

미국은 정부조달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중소기업조달정책의 기본기준은 대통령실 조달정책국이 정한다. 구체적으로 조달기준에 대해서는 民需品の 경우에

는 총무관리청이, 군수품의 경우에는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정한다. 각 부처는 중소기업 및 不利企業振興局을 설치하고 중소기업조달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내의 조달업무에 직접 관여하고 중소기업조달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조달업무는 중소기업청내의 조달지원국(OPA)과 소수민족중흥기업진흥국이 주관한다. 전자는 중소기업 일반에 관한 조달기준의 입안, 지원자격의 인정, 원계약, 도급계약, 낙찰능력증명, 기술지도, 보증회사보증, 자동조달지원시스템, 홍보활동, 대표조달관의 각 부처 파견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후자는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의 원계약자가 되어 소수민족, 여성, 신체장애인이 경영하는 不利中小企業에 하청발주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중소기업청의 대표조사관(PCR)은 조달량이 많은 국방성, 항공우주국, 총무관리청 등에 상주하고 중소기업청을 대표하여 각 부처의 중소기업조달정책의 입안, 목표의 설정, 조달절차결정 등에 참여, 중소기업청 지원시책과의 조정, 중소기업특별목표의 설정 등 조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먼저 공정한 배분기준은 1944년 잉여군수물자 등의 자산처분에 관한 중소기업에의 공정한 배분을 정한 잉여자산법 이래 상당히 논의를 거듭하여 온 것이지만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카터 행정부는 30%를, 레이건 행정부는 20%를 공정한 배분기준으로 했으며 현재는 2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⁸⁾

다음 원계약에 의한 지원은 계약금액별, 지역별 및 계약대상별 특별기준에 따라 조달기관과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청 사이의 직접계약을 말한다. 계약금액별 기준은 1만달러 이하의 개별계약은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한다. 지역별기준은 연방조달기준에 근거하여 노동장관이 정하는 노동력과인지역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각 부처는 이러한 지역기준에 따라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당해지역에서 도급발주하는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의 순으로 우선 발주할 의무가 있다. 계약대상별기준은 不利企業에 한하여서만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여 최저입찰자로 한다. 다만 최저입찰가격의 10% 범위 안에 있는 중소기업에 낙찰우선권을 준다. 계약순위는 ① 중소기업청, ② 不利中小企業, ③ 불리중소기업에게 도급을 주는 중소기업, ④ 일반중소기업, ⑤ ③에게 도급을 주는 기업, ⑥ ③과 ④에게 도급을 주는 기업등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은 노동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하청도급계약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원계약자는 다음과 같이 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특정지역에 하청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1만달러 이상 50만달러 이하의 계약자는 소수민족중소기업, 노동력과인지역의 중소기업, 일반중소기업과의 하청우선계약계획을, 50만달러 이상 계약자는 앞에서 말한 하청계획을, 위의 원계약자의 50만 달러 이상 하청자는 중소기업의 재하청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10만 달러 이상의 도급발주자는 그 도급자와의 계약조건 등을 조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도급계획작성을 지도하는 한편 도급계약의 체결에 개입하고 도급계획의 이행상황을 감시하며 그 시정조치를 강구한다. 계약대금은 전도금, 중간지불금, 최종지불금의 구분에 따라 지출한다. 최종지불기일

8) 중소기업에의 배분율을 명문화한 것으로는 신체장애자중소기업에 대한 것과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다. 전자는 연간 1억달러를 한도로 하는 특별규준이고 후자는 각 성청의 연구개발 외주예산의 일정율을 별도 범위로 한다.

이 현저히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한 법정이자를 붙이거나 계약가격을 조정한다.

7. 경영지도지원정책

SBA의 경영지도정책에 관한 업무를 크게 나누어 첫째 경영실무관련책등의 편집, 발매, 배포를 하는 출판업무, 둘째 SBA지원 연수제도의 개최를 통한 계몽사업, 셋째 경영상담 및 진단지도사업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출판사업분야에는 SBA는 상무성과 협력하여 「중소기업경영입문서」, 「중소기업기술입문서」 등 중소기업관련 소책자를 발행하고 있다.

계몽사업분야에서는 대학, 정부제기관, 지역상공회의소, 업계단체 등과 협력하여 특정 주제하에서 경영실무강습회 개최를 주관하고, 세무관련분야에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과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또한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일일경영실무강습회(one day workshop)을 개최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부문 경영지도지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기업과 업계단체들과 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관련강습회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Ford, Chrysler, Goodrich, Shell 등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경영상담 및 진단지도사업은 금융지원사업과 정부조달사업의 보조적인 사업에 불과하였으나 1964년 퇴직자경영봉사단(Service Corps of Retired Executives: SCORE)가 조직되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부상되었다. 이것은 민간 컨설팅회사를 이용할 수 없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퇴역전문경영인이 자원봉사형태로 무료경영지도와 자문을 행하는 제도이다.⁹⁾

그러나 이 제도도 다른 지원제도와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민간부문 제도와 경쟁하지 않는 보완적인 범위에서 시행되고 있다. 경영지도제도도 민간 컨설팅회사의 이용이 곤란한 중소기업, 특히 영세기업과 소수민족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민간과 경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SBA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퇴직경영자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이용하는 것이다.

8. 기술개발지원정책

8.1 기술혁신법

이 법은 상무부를 중심으로 하여 기술혁신정책을 체계화하고 산업기술국, 연방기술이용센터 및 연방시험연구기관 등의 서어비스 부문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9) 1996년 현재 현직에서 퇴직한 각계 전문가 13,000명(1,200은 현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800여곳에 걸쳐 있는 388개 지부에 각각 소속되어 있다. 1주일에 평균 10-12시간 정도 봉사하며 기업당 지도기간은 없다. National Office에서 전체사업을 관장하며 SBA에서 교통비 등 실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제도의 성공을 바탕으로 1969년에는 퇴직경영자 뿐만아니라 현역경영자도 자원봉사로 참여하는 현역경영자봉사단(Active Corps of Executive:ACE)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다.

- ① 산업기술국(OIT) : 산업기술국은 이법에 근거하여 관련대학에 산업기술센터를 설치할 권고하고 산학협동에 의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연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에 역점을 둔다. 산업기술센터의 사업비는 산업기술국이 직접 부담하고, 국방성 미국항공우주국, 전 미 과학재단 등과 협의하여 지출한다. 산업기술국 및 산업기술센터의 사업을 심의, 조사 및 감사하기 위하여 전국산업기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15인으로하며, 상무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한다.
- ② 연방기술이용센터(CUFT) :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중앙정보센터의 기능을 하고 연방시험연구기관의 정보제공기준을 제공하며, 靑美科學財團, 연방시험연구기관 기술보급협회 등과 제휴하여 주 및 지방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요원은 각 시험연구기관에 배속시키고, 연구원을 교류하며, 컴퓨터시스템을 교환한다.
- ③ 연방시험연구기관 : 각 연구기관에 연구기술응용부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부소요의 특허기술활용 및 개발을 지도한다. 시험연구기관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은 그 연구개발예산 중 적어도 8.5% 이상을 연구기관에 지급한다.

8.2 중소기업기술혁신법(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 Act)¹⁰⁾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의 효율성이나 생산성에 있어서 대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은 대체로 금융기반이 취약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 제정되었다. 동법 중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 프로그램(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rch Program: SBIR)이 있다.

SBIR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연방정부의 국책연구개발사업분야에 대한 중소기업의 활용, 연방정부보유기술의 상업화촉진, 기술혁신이 불리한 소수집단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1억달러 이상의 R&D예산을 갖고 있는 연방정부부처와 정부산하기관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매년 동 예산의 일정비율을 SBIR사업예산으로 책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개발의 지원은 어느 한 단계만을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까지 각 단계별로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최종 상품화단계에서 민간자본의 참여에 의해서 동 연구사업을 완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SBIR프로그램에 의해 지원되는 자금은 원금상환 및 이자부담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금신청기업의 위험부담을 최소화시켜 주며 SBIR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 판권 등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됨으로써 신기술개발기업을 보호하고 있다.

10) 기타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기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계획에 의해 중소기업에게 실험 및 신제품개발을 위해 특별위탁할 의무, 각 성청의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실적에 관한 양원 중소기업위원회에의 보고의무, 중소기업청의 각 성청 중소기업 기술혁신계획에 대한 거부권 등이다. 여기서 특별위탁이란 1억달러 이상의 외주시험연구예산을 가지는 기관은 그 총액 중 1983년도에는 0.3%, 1984년도에는 0.6%, 1985년도에는 1.0%, 그 이후에는 1.25%를 1,000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가지는 기관은 1983년도에 0.1%, 1984년도에 0.3%, 1985년도에 0.5%, 그 이후에는 1.25%를 중소기업에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1981년도 정부기관의 연구개발위탁비는 143억달러로서, 그 중 중소기업에 대한 위탁비는 9.3억달러(6.3%)이었다.

SBIR의 자금은 연간 R&D예산이 1억달러를 초과하는 연방정부의 각 부처와 정부산하기관이 매년 자체 R&D예산의 일정비율(최고 1.25%)을 SBIR프로그램에 배정함으로써 마련된다.

8.3 기타 기술개발지원시책

태양광 초에너지연구개발법에서 시작되는 에너지부의 시책은 대체에너지의 개발, 석탄연료 등 재래식에너지의 효율화 및 절약에 관한 특정개발사업에 관하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연구개발예산의 10%를 중소기업에 특별히 배정할당하고 연구성과 및 시설의 임대, 정보의 제공, 공동개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자표, 거래기밀의 보호, 자금지원에 관한 대기업기술의 공개, 중소기업청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시책의 통일을 도모한다.

중소기업에너지용자법의 규정에 의한 용자로서, 에너지부에서 정하거나 인가하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의 발생기기, 화석연료 등의 절약기기제조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한다. 용자는 에너지부의 능력증명 외에 일반사업자 금융규준에 따라 실시한다.

1981년 개정특허법에 의한 시책이다. 회사소유 특허의 사용은 중소기업을 최우선으로 본다. 정부와 중소기업과의 공동개발, 정부보조금에 의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기술 및 특허의 사용은 중소기업을 최우선적으로 본다. 특허신청요금(800달러) 및 이후의 특허허가요금은 법정요금의 2분의 1로 한다.

9. 수출지원정책

상무부 소관 시책으로서 중소기업 수출투자관계 부처회의를 중심으로 1980년 중소기업수출진흥법에 의하여 본격화되었다.

9.1 수출촉진센터

상무부는 수출촉진센터를 국제통상청의 지방사무소에 설치하고, 무역에 관한 정보제공, 금융, 세금절차 등 모든 사무를 종합적으로 지도한다. 이를 위하여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청, 국세청, 해외민간투자공사 등으로부터 상주직원을 동센터에 파견한다.

9.2 지도보조금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진흥지원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다. 대상은 주정부기관, 중소기업진흥센터, 중소기업 수출진흥 각종 단체, 상무장관이 승인하는 중소기업 마케팅계획을 가지는 기관으로 한다. 이러한 계획의 내용은 계획지역 및 기업수, 시장분석능력, 금융, 신용보험, 조세, 시장조사, 출하, 거래계약, 해외사절단의 파견, 연수, 대상업체의 지도 등의 계획, 자문위원회(9인으로 구성하며 그중 중소기업대표 5인 이상) 및 전문직원의 배치 등이다. 위에서 말한 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비의 2분의 1이다. 다만, 15만달러를 한도로 한다.

9.3 중소기업청 시책

국가무역국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수출진흥정책을 입안하며, 관계기관의 협력을 얻어 종합지도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지방국에 수출진흥 전문관을 배치하며, 수출금융을 실시하는 것이 주요 수출촉진업무이다.

수출용자조건은 중소기업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1년 이상의 무역실적을 가지는 기업이어야 하며, 용자는 50만달러를 한도로 하는 중소기업청의 보증용자이고 기간은 18개월이다. 금리는 법정이자 또는 적절한 이자이며, 담보는 재고품 또는 매각대금으로 하고 금융기관 약정료는 용자액의 0.25%로 하되 200달러를 한도로 한다.

중소기업청의 보증료는 2%이고 자금사용은 시장개척, 조사비, 여비, 해외견본시 참여비, 상담비, 수출제품의 제조 및 구입에 관한 자료비, 노동비 등이며, 통상적인 운전자금에 대하여는 일반사업자금용자제도를 적용한다.

10. 종업원지주제도 촉진정책

중소기업종업원지주법과 경제재생법에 의한 시책이다. 전자는 소정의 종업원트러스트에 대한 금융이고 후자는 과세우대시책이다. 종업원지주제도는 19세기에 출현하여 1920년대에 급속히 발전하였으나, 세계대공황으로 인하여 주춤거리다가 1950년대부터 다시 활기를 찾아서 뉴욕 상장회사의 20%정도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 형태는 내국세법에 규정된 주식구입제도, 근검저축제도, 이윤분배제도, 주식상여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그 주된 효과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동일화시킴으로써 노동의욕을 향상시키고, 노동자의 이동을 방지하며, 복합기업에 의한 흡수를 막고, 경영자의 퇴직에 따르는 중소기업의 창설, 중소기업의 존속 등이다.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중소기업으로서, 내국세법에 해당하는 조건부 종업원지주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의 종업원 과반수가 조건부 종업원트러스트를 결성하고, 당해 중소기업의 의결권 주 중 51% 이상을 취득할 계획을 가지는 때에는 동법에 의하여 일반사업자금을 용자받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당해 기업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성하는 트러스트를 법인기업으로 보고, 그 주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것이다.

조건부 종업원트러스트는 주식취득계획에 따라 일괄적 또는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종업원에게 배분하고, 주식의결권은 주식회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퇴직 종업원의 주식은 조건부 종업원트러스트가 취득하여 재분배한다. 이 법에 해당하는 조건부 종업원트러스트가 있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종업원트러스트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는데 보증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종업원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재취득할 수 있고, 종업원트러스트의 대표를 이사회에 참가시켜서 경영내용을 공개한다.

1981년 경제재생법에 의하여 조건부 종업원트러스트에 주식을 양도하는 기업은 그 과세대상

액으로부터 종업원트러스트에 양도한 주식의 금액과 이 트러스트에 속한 종업원의 급여총액 중 0.5%(1985년 이후에는 0.7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다. 다만, 공제액이 25,000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90%로 한다. 이에 의하여 자금의 내부유보를 증대시키고, 채투자를 촉진한다.

11. 불리중소기업시책

11.1 일반기준

(1) 지원대상기업의 정의

사회적 및 경제적으로 불리한 조건하에 있는 자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¹¹⁾ 이러한 자가 노동자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이러한 기업의 창업희망자, 이러한 기업의 구성단체 등으로서, 중소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달시책

조달권한을 가지는 정부기관, 정부출자기업은 "중소기업 및 불리기업 지원부"라는 기관을 설치하고, 불리한 중소기업, 특히 소수민족기업, 여성기업 등으로부터의 조달을 우선하게 한다. 지원시책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계약세분화에 의한 소액조달, 수시계약, 낙찰순위의 앞당김, 다액수주자의 도급발주의 의무, 낙찰가격보조금지급 등을 들 수 있다.

(3) 중소기업청의 사업

중소기업법 규정에 의한 불리중소기업시책으로서 중소기업청이 각 부처의 원계약자가 되고, 물품이나 공사를 수주한 다음에 이를 불리중소기업에 도급을 주고, 그 계약이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대표조달관은 각 부처의 조달 중 적당한 것을 선별하고 신청인과 동석하여 계약조건을 정하며, 관계부처, 중소기업청 및 신청인 등 3자 공동계약을 체결한다.

11) 사회적 조건이 불리한 자라 함은 시민권을 가지는 자로서, 인종적, 민족적 선입관이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하여 그 발전을 크게 저해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흑인, 토착민, 스페인계 시민, 아세아태평양시민 등 중소기업청이 지정하는 집단에 속하는 소수민족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장관이 지정하는 장기경제불황지대, 실업자 집중지대에 장기거주하는 자, 장기신체장애자로서 사회적 및 직업적 제한, 고용이나 사업기회의 제한을 받는 자, 범죄경력자와 같이 개인적 및 사회적 경력이 근거한 장기실업자, 부녀자와 같이 차별행위로 인한 장기 저소득자 등이 이에 속한다.

경제적 조건이 불리한 자라 함은 사회적 약조건 이외의 이유로 자유경쟁조건이 현저하게 결여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면 자산, 수익성, 자금조달, 보충사회보종의 취득 등이 매우 곤란한 자가 이에 해당한다.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위에서 말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업, 직업적 경험, 학력, 소질 등으로 보아서 정책적 지원에 의하여 독립자영의 기업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예상되는 자,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필요한 생산수단, 자금, 경영지도 등을 얻을 수 없는 자, 선량한 성격의 자로 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청 이외에서는 보조를 받지 못한 자에 한하여 그 지원대상으로 하며, 결정요건은 일반중소기업의 결정요건에 준한다.

계약이행책임은 중소기업청과 신청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계약가격, 납기, 지방서 등은 앞에서 말한 종합사업계획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각 부처는 계약이행을 위한 기술지도 전도금지급, 계약이행보증 등이 면제된다.

중소기업청의 대표조달관은 각 부처의 조달 중 적당한 것을 선별하고 신청인과 동석하여 계약조건을 정하며, 관계부처, 중소기업청 및 신청인 등 3자 공동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이행책임은 중소기업청과 신청인이 연대책임을 진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계약체결사무의 대행과 계약종료시까지 중소기업청이 위촉하는 상담회사에 의한 경영기술지도를 지원한다. 기간은 적어도 6일 이상으로 하며, 종합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운전 및 설비자금을 보증용자하고, 장기자금(사채, 주식)은 소수민족 중소기업투자회사를 경유하여 실시한다. 이러한 투자회사는 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신청인의 경영관리를 지도한다. 계약자의 자금은 그 거래은행이 중소기업청과의 계약에 따라 특별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필요한 자금의 출납은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받는다. 납입금은 모두 이러한 특별구좌에 납입하고 구좌의 관리책임은 거래은행이 담당한다.

11.2 소수민족중소기업시책

소수민족기업시책은 상무성 소수민족기업진흥국과 중소기업청의 소수민족중소기업진흥국이 주관한다. 전자는 기본정책을 입안하고, 각 국청의 사무를 조정하며, 기타 각 부처의 소관의 업무를 처리한다. 그 시책대상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기업, 통신 및 의료업, 성장분야의 제조업 등이고, 대기업, 소매업, 일반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청은 소수민족기업을 앞에서 말한 상무성대상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장단기의 설비 및 운전자금은 경제기회용자, 소수민족중소기업투자회사, 소수민족은행, 주 및 지방개발회사 등을 통하여 지원한다. 그 중 소수민족은행은 1980년말 현재 평균자산액은 1,500만달러, 평균대출잔고는 350만달러이었고, 그 주된 업무는 소수민족기업에 대한 단기융자이다. 지원시책은 재무성의 정부자금 예탁(5억달러) 정부자금의 출납, 예대율의 완화 등 은행법상의 우대조치, 자본이득세의 경감 등 세법상의 우대조치 등이 있다.

경영기술지도는 상무성계통, 중소기업청계통, 기타 정부기관계통 등으로 대별된다. 상무성계통은 소수민족기업진흥청과 그 15개 지방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외에 위탁지도사업이 있다. 중소기업청의 지도사업으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상담회사에서 실시하는 위탁계약지도사업이다. 그 주된 내용은 중소기업법에 규정된 사업, 자금조달, 기술개발 등의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러한 상담회사에 위촉하여 장기적으로 지도하는 사업이다. 신청인은 이러한 회사의 지도를 받아서 종합사업계획을 세우고, 중소기업청의 승인을 얻는다. 그 후 6개월 또는 1년 이상에 걸쳐 경영관리 기술, 기부, 마케팅 등 각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도를 받고 자금조달, 수주 등의 목적을 달성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라틴아메리카제조업협회, 국제흑인기업지도자협회 등이 있다.

11.3 인디언중소기업시책

인디언 중소기업 지원시책은 내무성의 인디언기업진흥국과 중소기업청의 소수민족중소기업진

홍국이 주관한다. 전자는 기본정책을 세우고 각 부처사업을 조정하며 거주지내 기업의 진흥을 다른 시책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그 대표적인 것은 거주지내 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융자로서, 1기업당 100만달러(중소기업청 35만달러)를 한도로 실시한다. 후자는 전국에 분산되어 있는 인디언중소기업에 관한 시책을 주관한다. 그 시책기준은 앞에 말한 소수민족 중소기업시책기준에 준한다. 이를 요약해본다.

아메리카 인디언, 에스키모, 알래스카 토착민 등이 100%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또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위에 제시한 자들인 기업으로서, 앞에서 말한 소수민족 지원대책이 되는 자격을 구비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중소기업청의 일반사업자금융자 한도액은 직접출자 5만달러, 협조 및 보증융자는 35만달러로 한다. 인디언국과 민간기관의 협조융자와 그 보증을 인정한다. 융자신청으로부터 교부에 이르는 모든 사무처리는 중소기업청이 담당한다.

11.4 여성중소기업시책

여성이 51% 이상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책으로서 그 기본정책은 대통령 여성자문위원회, 부처 여성기업위원회 및 노동성 여성국이 주관한다. 일반 여성기업정책은 노동성 여성국이,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청 여성기업실과 소수민족 중소기업진흥부가 주관한다. 중소기업청의 시책에 있어서는 소수민족 중소기업시책 기준을 준용한다.

11.5 재향군인 중소기업 지원시책

상이군인중소기업시책으로서 월남전쟁의 상이군인의 중소기업을 우선시한다. 재향군인청이 주관하고, 중소기업청이 보완한다. 시책기준은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소수민족 중소기업 기원 기준에 의한다. 자격요건은 재향군인으로서 장해율이 30% 이상의 연금수급권자(불명예제대 제외)가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지원은 1981년 재향군인중소기업융자법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융자부인 기업에 대하여 재향군인청이 융자를 실시한다. 대부한도는 20만달러(직대, 보증)이고, 기간은 10년(시설 및 장비는 20년)이며, 금리는 시장금리 이하로 한다. 사용목적은 설비의 운전 및 채무변제 등이고, 상환은 재향군인청과 차용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청의 융자에 대하여는 재향군인청이 보증한다.

12. 우수인력확보정책

미국에서 모험자본을 활용한 중소기업들 가운데 적극적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른바 Stock Option제도를 창안해냈다. 이 제도는 핵심기술자나 직원에게 기업성장후 주가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채용당시의 가격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Stock Option을 부여받게 되면 소속회사가 성장하여 주가가격이 오르는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벤처형 중소기업의 고급인력확보가 용이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특히 연방정부는 Stock Option을 행사하여 주식을 부여받을 경우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여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첨단기술분야의 장래성있는 벤처형 중소기업들이 고급인력을 유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75%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13. 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정책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의 전개는 1960년대, 1970년대는 주로 연방정부기구인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주정부등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1980년 이후 지역실정을 감안한 중소기업정책이 주정부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되고 있다.

이 절은 미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관점에서 실시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의 실정과 그 배경이 되고 있는 주경제의 변모, 특히 산업구조에 주목하고 그 문제인식과 정책대응에 대해서 살펴본다.

13.1 산업구조변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인식

경제발전이 부진했던 남부주들이 1980년 이후 동부주에 있던 공장들의 이전, 일본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의 증대와 이에 따른 각종서비스업, 금융업, 소매업 등의 확대에 의해 급속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¹²⁾ 이에 대해 중동부주는 농업부진, 제조업에서 타주기업의 추격, EC제국 일본과 신흥공업국들의 미국시장에의 수출증대 등으로 비교우위를 상실하고 공장폐쇄 및 타주로의 이주가 촉진되고 있다.¹³⁾ 이것은 각 주경제에서 정체하고 있는 주들에게는 여러가지 경제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예에 해당하는 일리노이주의 경우를 보면 일리노이 주정부는 1979년에 지역개발국(Illinois Development of Commerce and Community Affairs:DCCA)을 새롭게 설치하고 1985년 총예산23억달러를 들여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목적은 일리노이주 경제의 경쟁력이 타주에 비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산학관의 밀접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존산업을 강화하고, 신규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同局은 첫째, 하이테크진흥책의 도입¹⁴⁾ 둘째, Incubator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규

12)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첨단산업진흥과 신산업의 제창은, 제4차 전국종합개발에서 보듯이 동경중심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경제불균형문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런 지역간 불균형문제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부진한 지역에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간의 불균형격차가 좁혀지고 있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13) 제조공장뿐만 아니라 본사도 이전되고 있다. 포춘지 선정 전미 상위 500개 기업가운데 뉴욕소재 본사는 1985년에서 88년사이에 33%감소했던 것에 비해 텍사스주는 24%, 미주리주는 30%, 유타주는 무려 160%나 각각 증가하였다.

14) 여기에는 전자, 유전공학, 신소재, 로봇 등 4개분야가 포함되고 있다.

기업육성책 도입, 세제, 州內企業의 수출진흥과 외국기업유치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화대책의 도입을 도모하는 한편 쇠퇴지역에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단지¹⁵⁾(enterprise zone)의 정비강화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지역경제와 별로 연관효과를 갖지 못하는 대기업이 대상이 아니고 자본의 열악성으로 他州,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이 없는 중소기업과 신규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3.2 중소기업영역변화와 정책대응

미국에서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독점폐해가 초래하는 시장경제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는 중요한 구성요소로 인식하여 지원·육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대기업과 경쟁에서 배제되고 다만 지역수요와 개별 특수분야수요에 관련이 있는 곳에서 중소기업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구조가 소프트화됨에 따라 대기업의 거대한 자본에 의한 생산방법과 마케팅방법으로 대응할 수 없는 각종 서비스업과 제조업과 관련이 있는 R & D부문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이 이동해 가게 되었다. 즉 중소기업은 수요의 범위가 한정적인 고객을 상대로 하는 극히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과 신기술을 얻기위한 연구개발부문처럼 지식집약적인 산업에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 것이다. 이들 부문은 대부분 대기업과 대기업사이의 조그만 틈새시장을 바탕으로 하거나 기존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신규분야이다.

그러므로 한편에서 대기업보다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그 취약성도 현저하다. 현상적으로 이것은 높은 창업률과 높은 도산율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신규기업의 문제점은 대기업의 진입에 의한 경쟁관계의 격화와 같은 외부적인 문제보다는 오히려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재무, 인사와 마케팅 등 경영전반에 관한 경험부족으로 인한 내부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었다. 경영의 독립성과 리스크의 개인부담이라는 미국의 경영풍토에서 새로운 기업의 창업보다는 도산율을 낮추려는 정책적 대응이 지방자치단체들은 모색하게 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나온 구체적인 정책이 이른바 Incubator제도이다. 이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이 독립적인 경영에 문제가 있지만 잠재성장력이 있는 이른바 '미숙아기업'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경영지원을 하는 것이다. 즉 중소기업을 압박하고 있는 일반관리경비삭감과 전문기술의 상품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前者는 전화교환, 비서업무, 문서작성, 기타편의시설이용(커피, 청소, 팩스, 회의실 등) 등을 인큐베이터의 가입기업이 무료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後者는 컨설팅업무이다. 즉 임금조정등의 경영전반적인 문제에서 고도기술에 관한 정보제공까지 대학과 연구기관등 외부관계자의 소개가 중요한 업무로 되어있다.

인큐베이터 가입기업의 구성을 보면 대학주도형의 일부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기술과 유전공학등 첨단분야에 가입하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그 분야가 대체로 상당히 다양하다.¹⁶⁾ 이러한

15) 일리노이주정부는 1982년 사업단지법을 발효하고 이 법에 따라 DCCA는 83년-89년에 걸쳐 68지역을 지정하였다. 이렇게 지정된 단지에는 매출세, 전기가스세, 법인소득세 등에 우대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기업의 공통점은 첫째 제조업부문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특화되어 있다는 점, 둘째 비제조업부문에서는 각종 서비스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 셋째 개별 특수한 수요에 특화된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 제도가 주경제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첨단산업 등 신규산업을 적극 육성함으로써 고용창출에 큰 효과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고용효과가 큰 일반중소기업, 소수민족기업, 여성기업 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각종 금융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인큐베이터제도는 특수한 신규산업분야에의 모험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3. 지방중소기업과 지역개발지원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은 각 주정부에 의해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연방정부는 주 및 지방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래서 각 주 및 지방정부는 지역개발이 각 주 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되도록 많은 중소기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 제공한 지역개발과 관련된 지원금액은 1992년 45억달러, 1993년 69억달러, 1994년 72억달러로 그 지원폭이 증가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통하지 않고 연방차원의 지역개발지원을 하는 것이 외국무역지역에 대한 지원이다. 외국무역지역은 상무부 국제무역국에서 관장하며 해외로부터 국내로 제조 및 가공시설을 이전하고 수출을 진흥시키기위해 설정되었다. 대상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상업 및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고양시킬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각 주정부의 지역개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수행되고 있다.

주 및 지방정부는 산업개발채권(industrial development bond)을 발행하여 지역개발에 활용한다. 산업채권의 이자에 대한 연방조세 및 기타 주의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산업개발채권에 대한 명목수익률이 낮더라도 구입할 수 있는 충분한 유인이 발생한다. 산업개발채권은 州마다 그 활용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토지, 기계 및 장비 등 주로 시설재에 자금을 제공하거나 시설을 구매하여 임대한다. 또한 산업개발채권 발행자금으로 구입한 토지, 기계 및 장비, 건물 등의 시설재는 일반적으로 재산세 등의 조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州정부는 중소기업에게 싸 임대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4. 미국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특징

미국의 중소기업정책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6) 대학주도형 인큐베이터의 대표적인 예로는 북캐롤라이나주의 Ben Crag Center와 University Business Incubator Center가 있다. Ben Crag Center의 예를 보면 가입기업의 16개 중에서 제조 생산부문에 3개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에 1개사, 시험분석과 기술정보분야에 7개사, 엔진이어링서비스분야를 포함한 기술관련 7개사, 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정보처리 1개사, 광고선전관련업이 2개사, 화학관련이 1개사 호텔, 식당 등 접대에 관한 교보작성이 1개사이었다.

첫째,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명확한 이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 문제는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원배분이 후생을 극대화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경쟁적이고 공정한 시장원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경쟁조건이 동등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이 소수불리기업은 상당히 불리한 상태에 있으므로 경쟁할 수 있는 조건까지는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취지에서 특히 불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중소기업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중소기업청이 직접지원을 수행하기보다는 여타 정부부처의 예산을 이용하고 각지방의 발전을 고려하며 민간부문과 연계속에서 수행하고 있다. 조달지원이나 중소기업기술혁신연구 프로그램은 여타 정부예산을 이용한 경우이며 중소기업대학이나 중소기업개발센터 중소기업투자회사는 각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고려한 예이다.

셋째,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경영자문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봉사의 형태로 퇴역경영자봉사단이나 현역경영자단을 통해 사업경험이 있는 민간인들이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자문에 응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이런 자원봉사단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넷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어느 나라 보다도 금융시장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어느 정도 거래실적이 있고 신용이 있으면 일반은행을 통해서 금융을 조달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 불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미국은 뉴욕증권거래소와 필적할 만한 비상장주식의 장외거래시장인 NASDAQ을 활성화하여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을 지원하고 있고 민간모험자본이 회수가 가능하도록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연방정부도 SBIC 등을 통해서 모험자본형태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섯째,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방정부를 통해 무상지원, 조세감면 등 직접적인 보조방식을 통해 지역개발, 연구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인력개발, 환경오염방지 등 WTO의 허용보조금 수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도 산업개발채권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각 주 및 지방의 특색에 부합되게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여섯째, 미국은 기술개발관련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을 제정하여 SBIR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예산규모도 클 뿐아니라 전 부처에 걸쳐 참여할 수 있고, 단계별로 지원하며 실패해도 상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을 도모할 수 있다.

15. 한국 중소기업지원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15.1 명확한 중소기업정책이념

미국은 자유경쟁원리가 모든 경제주체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자원의 최적배분에 의해

경제적 후생이 증가한다는 확신아래 불리한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구조의 독점화를 방지하고 자유경쟁체제를 유지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지원 육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에 대한 이념이 분명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문제를 경제나 산업분야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편의의 시각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체제유지를 유지한다는 원칙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기구에 의한 자원배분메카니즘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 산업에 있어서의 중요성과 함께 각 지역별 고용확대, 지역주민 소득향상 및 지역개발과 같이 일반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중소기업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보듯이 정부 각 부처,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인 금융기관, 대기업, 각 민간사회단체, 각종연구기관, 대학 등이 전국적으로 분야별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15.2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조달기회의 확대

한국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고질적인 문제중의 하나가 자금조달문제이다. 자금조달의 큰 특징은 외부금융비중이 높고 외부금융중에도 은행대출 등 간접금융비중이 높음에 따라 금융기관의 만성적인 재원부족과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가중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다른 국가에 비해 민간은행을 통해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지만 또한 NASDAQ과 같은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과 모험자본을 통한 직접금융조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도 보조금성격의 금융지원보다도 중소기업이 자금조달을 쉽게 할 수 있도록 간접금융과 직접금융의 다양한 자금조달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15.3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개편

정책자금은 보조금성격이 강하고 시장메카니즘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만은 정책금리차이가 1~2%정도이므로 정책자금에 대한 가수요가 별로 없고 또한 상환기간이 운전자금을 제외하고는 거의 15~25년이므로 중소기업들이 창업하거나 성장성이 있는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미국의 정책자금은 대부분 정부의 보증대출인데 금리차가 전혀 없고 상환기간이 25년이내로 장기융자형태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경우 금리차가 5-6%로 항시 초과수요상태여서 대출받기도 힘들뿐만아니라 상환기간도 3-10년으로 중소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고 사업화가 어느 정도 되는 시점에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실효성이 적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 정책자금의 금리를 시장금리수준으로 인상하여 시장왜곡을 축소하고 그 대신 상환기간을 장기화함으로써 사업화가 충분히 이루어져 투자수익이 발생할 때 상환하게 하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이다.

특히 미국은 연구기술개발, 지역개발, 환경오염방지 등에 관련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차보조에 의한 금융지원보다는 무상공여, 조세감면 등의 보조금형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런 형태의 보조금은 WTO기준에서도 대부분 허용보조금으로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정책금융형태의 지원보다도 무상공여 등 직접지원형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15.4 효율적인 기술개발 지원방안

중소기업지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품질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통한 근본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기술내용이나 수준이 다양하여 해당기술을 제공할 전문기관이나 인력은 찾기도 어렵고 시간이 너무 소요되어 적기에 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품질과 기술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관, 대기업, 중소기업, 민간연구소, 대학 등을 전체로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특정기술인력, 특정분야에로기술 및 신기술,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기술특허, 외국기술도입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 퇴역 전문경영인들에 의한 경영지도방안도 좋은 시사점을 준다.

15.5 영세기업에 대한 특별지원대책

한국의 경우 95년 현재 중소기업의 97%가 50명미만의 영세기업이나 대부분의 지원은 사실상 중규모이상의 기업이 받고 있다. 영세기업은 절대적인 담보와 신용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기회의 상실에 따른 자금난, 인력난, 판매난 등 중규모기업과는 또다른 차원의 중소기업문제를 지니고 있으나 중소기업지원시책은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없다.

미국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원칙하에서 영세기업을 위해 별도의 대출제도(micro loan)를 운영하고 있고 정부조달에서도 하청계약에서 우선권을 주고 있다. 또한 자생력이 없어 일반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세기업을 위한 보증의 비중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도 일반 중소기업지원책과는 별도로 영세기업을 위한 지원대책수립이 필요하다.

15.6 중소기업 인력개발

중소기업경영의 애로 중의 하나가 전문인력 부족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주도 잉여인력의 기술직업교육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공급하고 또한 기존의 노동자를 생산성제고를 위해 정부가 재교육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대만은 이것과 병행하여 중소기업이 인재양성을 위해 투자할 때는 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통해서, 미국은 Stock Option제도를 통해서 중소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양성에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Stock Option제도는 핵심기술자나 직원에게 기업성장후 주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채용당시의 가격으로 일정량의 주식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Stock Option을 부여받게 되면 소속회사가 성장하여 주식가격이 오르는 경우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벤처형 중소기업의 고급인력확보가 용이하여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첨단기술분야의 장래성있는 벤처형 중소기업들이 고급인력을 유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제도가 되고 있으며 이들의 75%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특히 한국처럼 고급인력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나라에서는 중소기업이 고급인력을 유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생각되므로 벤처형 중소기업들은 동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정부는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15.7 중소기업업무의 일원화

미국의 중소기업청은 독립기구로서 의회에만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연방정부의 모든 부처에 중소기업관련업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중소기업에 관한 모든 업무가 중소기업청을 정점으로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중소기업지원업무를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15.8 중소기업을 통한 지역개발

중소기업은 지방노동을 흡수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간 균형 발전을 기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지방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역개발 차원에서 외국무역지역을 지정하여 각종세제지원 및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또한 지방정부를 통해 무상지원, 조세감면 등 직접적인 보조방식을 통해 지역개발에 관련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 및 지방정부도 산업개발채권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각 주 및 지방의 특색에 부합되게 지역개발을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지방자치체도를 시작한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좋은 시사점을 주리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국(1993), 주요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산업연구원(1991),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전략과 시책방향.
 산업연구원(1994), 중소기업정책 및 지원체제 개선방향.
 손상호외(1994), 주요국의 산업지원제도와 국내제도의 개편방향.
 이덕훈 외(1995), 중소기업발전과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진흥공단(1983), 미국의 중소기업시책.
 중소기업청(1996), 외국의 중소기업지원제도.
 寺岡 寛(1994), *アメリカ中小企業論*, 信山社
 寺岡 寛(1990), *アメリカの中小企業政策*, 信山社
 Zoltan J A & D B Audretsch(1992), Has the role of small firms changed in the united states? Zoltan J A & D B Audretsch(eds) *Small Firms and Entrepreneurship: An East-West Perspective*
 Zoltan J A & D B Audretsch(1990), *Innovation and small firms*, MIT Press.
 Smith H(1994), Taiwan's industry policy during the 1980's and its relevance to the theory of strategic trade, *Pacific Economic Paper No.233*, Australia - Japan

Research Centre.

SBA(1993), *The state of small business: A report of the president.*

Piore M J (1990), United States of America, Sengenberger G L & M J Piore (eds) *The Re-emergence of Small Enterprises: Industrial Restructuring in Industrialized* Institute for Labor Studie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Labor Studies

